



주택임대차법(RTA)에서 집주인에 의한 “무조건적” 계약 해지 조항이 삭제되어야 할까요?

선택 사항

- 삭제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.
- 집주인에 의한 무조건적 계약 해지 조항 대신에 집주인이 기간 불확정 임대차(periodic tenancy)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해당 사유(예컨대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거나 주택 보수를 원하는 경우 등)를 규정한다.
- 무조건적 계약 해지 조항을 유지하고 그 대신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통보 기간을 늘린다.

의견을 알려주세요

- 주택임대차법에서 기간 불확정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무조건적 계약 해지 조항이 삭제되어야 할까요?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-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, 집주인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로 어떠한 것들이 주택임대차법에 새로 추가되어야 할까요?
- 무조건적 계약 해지 조항이 주택임대차법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, 그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장해야 할 해지 통보 기간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(예: 3개월, 6개월)?

의견 개진 방법은 간단합니다!

의견 제출:



consultations@dmirs.wa.gov.au

주택임대차법(RTA)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:



www.commerce.wa.gov.au/tenancyreview



1300 304 054

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

Department of Mines,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

Consumer Protection

Advice Line 1300 304 054
(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)

8.30am – 5.00pm Mon, Tue, Wed and Fri

9.00am – 5.00pm Thurs

Gordon Stephenson House

Level 2/140 William Street

Perth Western Australia 6000

Administration: (08) 6251 1400

Facsimile: (08) 6251 1401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Online

Website: www.dmirs.wa.gov.au

Email: consumer@dmirs.wa.gov.au

Mailing address

Locked Bag 100

East Perth WA 6892

Regional offices

Goldfields/Esperance (08) 9021 9494

Great Southern (08) 9842 8366

Kimberley (08) 9191 8400

Mid-West (08) 9920 9800

North-West (08) 9185 0900

South-West (08) 9722 2888

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(TIS) 13 14 50

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
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.

